

강화훈련 운영지침

제정	1988. 4. 19.
개정	1991. 2. 12.
개정	1993. 6. 1.
개정	1995. 12. 1.
개정	1996. 3. 28.
개정	2002. 12. 26.
개정	2006. 9. 15.
개정	2008. 12. 22.
개정	2009. 12. 23.
개정	2010. 12. 23.
개정	2012. 12. 13.
개정	2015. 2. 13.
개정	2016. 6. 22.
개정	2018. 4. 12.
전부개정	2021. 1. 29.
개정	2021. 6. 9.
개정	2021.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훈련”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이하 “선

- 수준”)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2. “강화훈련 지도자”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국가대표를 확정하기 전에 강화훈련 참가자로 선발된 지도자를 말한다.
 3. “강화훈련 트레이너”는 강화훈련 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원 외의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강화훈련 트레이너에 준한다.
 4. “강화훈련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를 확정하기 전에 강화훈련 참가자로 선발된 선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 참가자와 훈련 관계자(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강화훈련 참가신청 및 입촌절차

- 제4조(훈련 참가신청)** ① 강화훈련 참가자는 회원종목단체가 선발·추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강화훈련 참가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체육회 국가대표 관리시스템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 <개정 2021. 12. 17.>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지도자	1. 이력서 2.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확인서(자격증 사본) 3. 지도경력 증명서 4. 지도자 계약서 사본 5. 건강진단서 6.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 7.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이사회 자료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출석서명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9.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10. 이사회 자료 11. 지도자 선발공고 증빙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 2.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3.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4. 트레이너 계약서 사본 5. 건강진단서 6.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7.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8.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9.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10. 트레이너 선발공고 증빙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출석 서명지 등) ※전담팀 동일
외국인 (지도자 및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 2.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3. 지도경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 4. 지도자 계약서 사본 5. 건강진단서 6.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7.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9.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10. 이사회 자료 	이사회 자료(지도자에 한함)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서 2.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회의안건, 회의록, 회의출석 서명지 등)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5.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6. 선수 선발공고 증빙 ※단체종목은 해당 시 제출	
--	--	--

- ③ 건강진단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강화훈련 참가 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한다.
- ④ 계약서에는 회원종목단체와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트레이너 간의 계약기간, 연봉, 업무 수행내용, 계약의 해지사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강화훈련 참가자 선발과 관련된 회의록, 선발전 결과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화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2. 강화훈련 기간에 3회 이상 강제 퇴촌경력이 있는 자
3.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훈련 참가제한으로 결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6조(입촌훈련 승인) ① 제4조에 따라 강화훈련을 위해 선수촌에 입촌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입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연간 국가대표 훈련 기본계획과 훈련여건 등을 검토하여 입촌 훈련에 대한 승인 여부를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단체의 재원으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를 강화훈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촌기간에 소요되는 식비 등 필요 경비 일체를 입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입촌훈련 요청 및 승인통보 시 입촌일시, 방법, 인원, 장소,

명단, 급식계획 등을 명확히 한다.

제7조(입촌절차) 강화훈련 참가자가 선수촌에 입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촌은 체육회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완료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발급하는 보안카드 등을 수령한 후, 선수촌 생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입촌 시에는 훈련과 관련 없는 물품은 일체 지참할 수 없으며, 차량은 선수촌에 등록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선수촌 생활

제8조(생활시간) 선수촌 일과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번	시 간	일 정	비 고
1	06:00 ~	기 상	
2	06:15 ~ 06:30	유연체조	
3	06:30 ~ 07:00	조조훈련	지도자 재량
4	07:00 ~ 08:30	조 식	
5	08:30 ~ 12:00	오전훈련	
6	12:00 ~ 13:30	중 식	
7	13:30 ~ 18:00	오후훈련	
8	18:00 ~ 19:30	석 식	
9	19:00 ~ 22:00	교양교육/자유학습	휴식/자율훈련
10	22:00 ~	취 침	

※세부훈련은 종목별 계획에 의거 시행

제9조(교육) ① 체육회는 강화훈련 참가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는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학생선수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교, 위탁교육, 이동수업, 교실운영 등을 지원한다.

- ③ 강화훈련에 60일 이상 참가하는 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반도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강화훈련 참가자는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 6. 9.>
- ⑤ 강화훈련 참가종목은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재능나눔, 지역사회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간담회) ① 선수총장은 필요한 경우 입촌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선수총장은 입촌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정례 간담회를 통해 생활내규, 인권, 청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③ 선수총장은 회의 및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 조치한다.

제11조(외출·외박) ① 입촌훈련 참가자는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수들이 외출·외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종목 지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지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출자는 당일 23:00까지 귀촌하여야 한다.
- ④ 선수총장은 특별한 경우 지도자 및 선수의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면회) ① 입촌훈련 참가자의 면회는 훈련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② 선수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식사) ① 식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급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강화훈련 참가자
2. 선수촌장이 강화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원 외 인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사전에 납부 받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훈련계획상 식사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종목 지도자는 1일전까지 선수식당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주말 식사인원 또는 외부 식사 계획이 있을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전에 훈련기획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진료) ① 체육회는 강화훈련에 참가중인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경미한 부상이나 질환일 경우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한다.
2.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뢰서를 발부하여 외부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 ② 체육회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시설장비 이용) ① 강화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설 또는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 영상분석실 등 각종 시설물과 훈련용 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목지도자는 1일 전까지 담당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승인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훈련용 기구는 사용이 끝나는 대로 정 위치에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4. 종목별 훈련장에 설치된 영상분석 장비는 해당 종목에서 관리한다.
5. 실내체육관 출입 시에는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전기, 수도 및 냉·난방기 사용자는 사용 후 점검하여 재난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제반 시설물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강이나 신규 훈련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훈련시설물 및 훈련용 기구 사용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선수촌 일반수칙) ① 선수촌에 입촌한 강화훈련 참가자는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2. 음주를 일체 해서는 안 되며, 선수는 흡연을 할 수 없다.

3. 도박이나 불건전한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4. 고성방가 등 정숙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생활 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은 삼가야 한다.

6. 강화훈련 참가자 및 훈련관계자 이외의 자는 선수숙소에 출입하지 못하며, 이성의 숙소동에는 출입하지 못한다.

7. 배정 받은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8. 숙소 내 일일청소는 사용자 본인이 하고, 쓰레기는 용도를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9. 선수촌의 출입은 정문을 이용하여야 한다.

10. 체육회가 발급한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기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오전 9시 이전에 생활지도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퇴촌) ① 입촌훈련 참가자가 제26조의 강화훈련 제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수촌장은 퇴촌을 명하고, 이 사실을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한다.

② 퇴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소 내부의 침구 등 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촌신고서를 생활지도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촌 기간 취급 부주의 및 고의로 시설과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2주 이상 강화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물을 선수숙소에 둘 수 없다.

제4장 강화훈련 운영

제18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목표 대회를 대비한 체육회 강화훈련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강화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기 어렵거나, 훈련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훈련방법) ① 강화훈련은 선수촌에서 행해지는 입촌훈련과 선수촌 밖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하며, 강화훈련 기간 지도자는 선수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입촌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밖에서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월간 훈련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촌외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종목의 특성 및 시설여건상 필요한 경우
2. 주요 국제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촌외에서 국내 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3. 촌외 소재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훈련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 외부팀 또는 해외 현지팀과 합동훈련이 필요한 경우
- ⑤ 선수촌 안에서 외부팀과의 합동훈련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요청 및 체육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종목 훈련장 이외의 시설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입촌훈련 선수의 훈련 성과측정을 위하여 체력, 메디컬 체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임무)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자의 임무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 14조에 따른다.

제21조(급식비 및 숙박비 지원) ① 체육회는 훈련계획에 따른 강화훈련 참가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한다.

②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촌외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는 촌외훈련 종료 후에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촌외훈련 시 소속팀 또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강화훈련기간 소속팀으로 복귀하거나 국내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강화훈련 대상 종목 중 국외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 자체예산으로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국내 촌외 훈련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지원) ① 체육회는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강화훈련기간 소속팀으로 복귀하거나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육회의 승인 하에 개인종목의 국가대표 선수가 특성훈련(소속훈련)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 수당 지급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특별훈련비)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개인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선정하여 특별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포상 및 격려금) 체육회는 강화훈련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훈련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포상 및 격려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체육회는 강화훈련에 참가 중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1회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도자의 역량 강화에 힘쓴다.

② 강화훈련 중인 지도자에 대한 성과 평가 방법은 별도의 성과 지표 및 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강화훈련 제외)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강화훈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외 요청을 한 경우
2.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촌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강화훈련 참가자를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해당종목단체가 대체선수를 선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및 「강화훈련운영지침」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 선수촌 일반수칙을 위반 또는 타 종목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집무(훈련)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자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강화훈련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3일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
7.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선수총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을 허용 또는, 부추기는 자

제27조(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 ① 선수총장은 강화훈련 참가자가 제26조제 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자의 강화훈련 제외 심사를 위해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선수총장은 강화훈련 제외가 의결된 때에는 해당자와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종목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촌외훈련

제28조(촌외훈련 신청)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촌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시작 1주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촌외훈련 실시사유 및 기대효과
2. 훈련기간, 장소, 인원
3. 촌외훈련 책임자
4. 소요액 및 재원
5. 기 타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촌외훈련 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한다.

③ 체육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촌외훈련비를 보조하며, 훈련은 해당 회원종목 단체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29조(촌외훈련 관리) ① 촌외훈련을 실시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집행부 임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와 촌외훈련 담당자를 각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 관리
2. 훈련상황 파악, 보고
3. 훈련여건 확보(훈련장 및 숙박시설)
4. 급식 및 위생관리
5. 훈련질서, 품위유지
6. 훈련지 관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7. 보조금 관리

③ 제1항의 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체육회는 촌외훈련 중인 해당종목의 지도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훈련계획 이행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제30조(촌외훈련 준수사항) ① 촌외훈련 참가자의 생활수칙은 선수촌 안에서의 훈련에 준한다.

② 촌외훈련 중인 종목의 관리책임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은 미리 작성한 계획 및 일과표에 따라 실시
2. 일자별 훈련참가현황을 포함한 훈련일지 작성 및 체육회 보고
3. 사건·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즉시 체육회 보고

4. 훈련기간 선수의 외출·외박 관리
5. 안전수칙 교육철저
6. 선수층의 지킴 및 지시사항 이행
7. 급식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칼로리 유지
8.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31조(촌외훈련 결과보고) ① 촌외훈련을 실시한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보조금 정산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장소, 인원, 책임자
2. 훈련방법, 전적(대회 출전의 경우)
3. 훈련 성과 및 문제점
4. 일자별 훈련참가현황

②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훈련을 제외시킬 수 있다.

1. 보조금의 정산 및 촌외훈련 실시결과 보고 지연
2. 촌외훈련비의 목적 외 사용
3. 훈련계획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촌외훈련비를 교부받거나 집행

제6장 보 칙

제32조(초상권 및 홍보활동) ① 강화훈련 참가자는 홍보, 교육, 행사 활동 또는 대회, 경기 참가 시 촬영과 인터뷰 등 체육회의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강화훈련 참가자는 자신의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체육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시 본인 또는 타인의 경기력 및 부상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3조(세부지침) 체육회는 강화훈련에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강화훈련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21. 1. 29.)

이 지침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9.)

이 지침은 2021. 6.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7.)

이 지침은 2021. 12. 17.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입촌훈련에 대한 서약]

훈련	① 각종 교육(소양, 생애주기 등)과 조조훈련에 성실히 참가한다. ② 훈련용 기구를 숙소나 다른 장소로 반출하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선수촌 생활	① 촌내 음주·도박을 하지 않으며,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를 하지 않는다. ②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입촌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선수는 흡연을 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④ 촌내에서 생활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 착용을 하지 않는다. 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성의 숙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⑥ 숙소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기타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촌외훈련에 대한 서약]

훈련	① 촌외훈련 참가자의 생활수칙은 국가대표선수촌 입촌훈련에 준한다. ② 훈련계획 및 일과표에 따라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다. ③ 지도자는 매일 아침 9시 이전 훈련인원 및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촌외 생활	① 숙소에서 음주·도박을 하지 않으며,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를 하지 않는다. ②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성의 숙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③ 숙소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기타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서약]

대회참가	①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시 개회식 및 폐회식 등 공식행사에 공식유니폼 또는 단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참가한다. ②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시 초상권, 사진, 이름,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때에는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타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④ IOC현장, OCA현장,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서약자 성명 (서명)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장 귀 하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종 목 :
직 위 :
성 명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06.>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은 20__년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로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등 징계이력 확인 결과 _____ (해당사항 없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강화훈련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훈련에 참가 할 것이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시에는 국가대표 자격 취소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서명)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체육인번호, 혈액형,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주택, 사무실), 전자우편, 학력사항, 경력사항, 체력, 근력, 메디컬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장학생 선정,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 선수 등록, 대회출전, 증명서발급에 이용 : 체육인번호, 성명, 증명사진, 경력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교통비,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 계좌번호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 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체육인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계좌번호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법 적 대 리 인

동 의 자

이 름

(인)

이 름

(인)

주민번호

20 년 월 일

동의자와의 관계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 취급자	직위	이메일	연락처
000협회/연맹	사무처장 000	부서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외출·외박 신청서

- 종 목 : (남·여)
- 성 명 :
- 사 유 :
- 행 선 지 : (연락처 :)
- 외출(박)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귀촌예정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귀 촌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상기와 같이 외출(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지도자 (인)

※ 본 신청서는 외출 시 웰컴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 촌 신 고 서

20

선수숙소(화랑관)	동 호	종목:	성명: (인)
-----------	-----	-----	---------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불량 상태 기재)
		양호	불량	
1	드라이기, 형광등, 콘센트 전원 OFF확인			
2	난방 및 에어컨 전원 OFF확인			
3	숙소 비품 상태			
4	화장실 청결 상태			
5	현관 정돈 상태			
6	발코니 정돈 상태			
7	쓰레기 분리수거			
8	기타			

숙소 불량상태 이상유무(이상있을시 O표시)

현관문, 방문, 창문, 방충망, 벽지, 바닥(온돌마루, 장판)	불박이장, 책상, 욕실, 발코니 타일, 세면기 수전, 양변기, 샤워기, 거울, 비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냉·난방 조절기, 방송 스피커, 현관 인터폰	발코니 도장, 환기휀 걸로 및 곰팡이, 마감코킹 오염 발코니 슬래브, 벽제 균열, 누수

손·망실(파손및분실) 항목

품목	파손(분실)	비고

▶ 기재요령: 천천히, 꼼꼼히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점검결과의 양호, 불량에 (○) 해주시고 불량상태 및 손·망실 항목을 기재 바랍니다.

※ 본 신청서는 퇴촌 후 생활지도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초외훈련 실시결과 및 정산 보고

1. 종목(세부종목) :
2. 기 간 :
3. 훈련장소 : (숙박장소 :)
4. 훈련책임자 :
5. 인 원 : 총 명(임원 명, 남자선수 명, 여자선수 명)
6. 훈련내용
 - 일일 훈련내용 및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 훈련방법, 전적(대회출전의 경우)
 - 훈련 성과 및 문제점
 - 선수 개인별 평가, 전력분석(대회출전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
7. 소요경비(정산내역서 : 별첨 작성)

재원별	과목	보조액	정산액	정산잔액	비고
국고보조	급식비				
	숙박비				
	계				
자체부담	교통비				
	·				
	·				
	·				
	계				
합	계				